



제 41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16호)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88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60호)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01호)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05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69호)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85호)

2024.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신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15
1. 개정안의 개요	15
2. 조문별 검토	16
가. 목적규정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 명시	16
나. 비축사업 관리 규정 신설	17
다.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24
라.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33

I.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안(2200016)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5. 30.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이원택의원안(2200088)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3.

다. 회 부 일 : 2024. 6. 11.

3. 문금주의원안(2200260)

가.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10.

다. 회 부 일 : 2024. 6. 11.

4. 황명선의원안(2200301)

가. 제 안 자 : 황명선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4. 6. 11.

다. 회 부 일 : 2024. 6. 12.

5. 이병진의원안(2200505)

가.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14.

다. 회 부 일 : 2024. 6. 17.

6. 어기구의원안(2200569)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18.

다. 회 부 일 : 2024. 6. 19.

7. 주철현의원안(2200585)

가.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18.

다. 회 부 일 : 2024.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안(2200016)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 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제2
호의3 신설).

2. 이원택의원안(2200088)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
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
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생산자인 농

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을 농산물 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을 평년가격,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제3항 신설).

라.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적정가격의 산정, 차액의 보전비율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3. 문금주의원안(2200260)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수산물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받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다.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4. 황명선의원안(2200301)

제안이유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고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이 반복되고 있어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농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농산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비율로 하여

보전하는 등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가격안정 및 국가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산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5항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4항 신설)
- 라.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최저보장제도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5. 이병진의원안(22005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6. 어기구의원안(2200569)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양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시장개방,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함)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 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7. 주철현의원안(2200585)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보장되지 않아 생산자인 농어민의 희생이 커지는 상황임.

쌀 및 주요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로 인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져가고 있고,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수산물도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다.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개요

총 7건의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의 차액 보전 규정, 수입비축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같은 취지¹⁾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9건²⁾은 대안(의안번호 2126706)으로 통합·조정되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의결(2024. 2. 1.) 되었고,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2024. 4. 18.) 및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2024. 5. 28.)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음(2024. 5. 29.).

1) 수입비축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과 관련된 이병진의원안(의안번호 2200505)은 제외

2) 의안번호 2100297,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331,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1358,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631,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884,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286,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369, 위성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385,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433,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규정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 명시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확보를 명시하려는 것임(황명선의원안 제1조).

현 행	황명선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u>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식량안보와 식량주권</u> ----- <u>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생활</u> ----- -----.

현행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식량인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수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목적 규정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확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의 목표를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나. 비축사업 관리 규정 신설

개정안은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환류, 판매실적 보고, 사업 점검 등 비축사업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이병진의원안 제13조의2 신설).

현 행	이병진의원안
<신 설>	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 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연도 수입농산물

현 행	이병진의원안
	<u>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u> <u>· 판매실적 · 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 제13조³⁾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⁴⁾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이하 “공사”)에서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수입비축사업은 국영무역⁵⁾ 방식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수입·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비축사업”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산 농산물을 수매·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수출하거나 외국 농산물을 수입·비축하여 이를 판매·처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입비축사업”이란 WTO협정에 따른 주요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비축사업의 위탁 및 협의회의 구성) ① 정부비축사업은 영 제12조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부비축 중 수매물량의 매입, 대금지급 등 수매부문은 그 일부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비축기지 시설(냉동·전기)의 운영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국영무역이란 국가 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식량안보 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로, 지정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공사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8개 품목⁶⁾을 대상으로 국영무역을 실시하여 농산물을 수입·비축·판매하고 있음.

< 국영무역 개요 >

구 분	내 용
정 의	지정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비축·판매하는 방식
목 표	수급불안·가격상승 시 수입농산물을 적기에 도입·공급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고,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수입 및 원산지 위조 등 시장 왜곡사례를 견제해 시장교란 방지
위탁 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상품목	(8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팥(녹두), 감자, 메밀
수입 방법	입찰규격, 한계물량 및 수입이행기간 등 aT 수입(도입)기준에 부합한 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시행
수익의 처분	농산물 수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전액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국내 농산물 수매·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지원 등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TRQ 수입관리의 이해」, 2023.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비축사업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목표로 수행되는 사업⁷⁾이나,

부여받아 수입·비축·판매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6)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대두(콩나물콩 포함), 팥(녹두 포함), 감자, 메밀

7)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수입비축사업"이란 WTO협정에 따른 주요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비축하였다가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행 법령을 보면 수입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서 공사로 하여금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⁸⁾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또는 판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 기관(공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입비축사업이 농산물의 수급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8)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3조(수입) ① 공사는 당해연도 사업지원기관의 수입지침, 기금운용계획, 정부의 수입증량 운용계획 등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신속·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입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판매 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 등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구매방법·외화사용·사고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자구매요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부비축농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하역 등에 의한 자연감량, 해상운송사고, 수량부족 등의 제반사고와 계약위반사고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의 조건 또는 약관과 국제무역관례에 준하여 처리하고 구상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사중재원의 구상불가판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위탁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지만, “수입비축사업” 용어에 대하여 현행법에 구체적인 설명이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비록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⁹⁾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나¹⁰⁾ 하위 법령을 법률이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직접 정의규정을 신설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윤미향의원안(의안번호 2126130)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국내 규제 조치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의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외교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어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9)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수입비축사업”이란 WTO협정에 따른 주요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
· 비축하였다가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4조제4호는 “수입비축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안 제13조의2제1항이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제13조제2항과 그 내용 및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 언급하는 “수입비축사업”은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상의 “수입비축사업”과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보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

제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1. 체약당사자들은 내국세 및 그밖의 내국과징금과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요건과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또는 국내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그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의 부과대상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입 또는 국내 상품에 내국세 또는 그밖의 내국과징금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는 불합치되지만 과세된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지 아니하기로 양허한 1947년 4월 10일 현재 유효한 무역협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승인된 현존하는 내국세에 관하여, 이를 부과하는 체약당사자는 동 내국세의 보호적 요소를 철폐하는 데 대한 보상에 필요한 정도까지 동 수입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동 무역협정상의 의무로부터 해제될 때까지는 동 내국세에 대한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4.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상품의 국적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운송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기초한 차등적 국내운임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 가공 또는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내국의 수량적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 특정 수량 또는 비율의 상품이 국내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함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내국의 수량적 규칙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5항의 규정은, 체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1939년 7월 1일, 1947년 4월 10일 또는 1948년 3월 24일 현재 동 체약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유효한 어떠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제5항의 규정에 반하는 이러한 규칙은 수입에 장애가 되도록 수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협상의 목적상 관세로 취급된다.
7.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어떠한 내국의 수량적 규정도 동 수량 또는 비율을 국외공급원간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8. (a) 이 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이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된 내국 세금 또는 과징금의 수익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생산자에 대한 지급금 및 정부의 국내상품 구매를 통하여 실현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국내생산자에게 배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9. 계약당사자들은 내국의 최고가격 통제조치가 이 조의 다른 규정에는 합치한다 하더라도 수입상품을 공급하는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계약당사자는 이러한 저해효과를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피할 목적으로 수출계약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다.

10. 이 조의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노출영화필름에 관한 것으로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다.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개정안은 특정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또는 적정가격(이하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문금주의원안·황명선의원안·어기구의원안·주철현의원안 제16조의2 신설 등).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신 설>	제16조의2(농산물 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균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초로 하되 생산비용 및 물가	제16조의2(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를 보호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16조의2(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기준가격[평균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	제16조의2(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균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	제16조의2(농산물 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균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	제16조의2(농산물 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균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현 행	윤준병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주철현 의원안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미곡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미곡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도(이하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 생산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식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이하 “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현 행	윤준병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주철현 의원안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곡, 채소, 과일 등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을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평년가격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가 필요한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1.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농수산물 품목 2.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및 기준가격 3. 농수산물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

현 행	윤준병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주철현 의원안
	⑤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 정제도의 차액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 이를 말한다. 이 이하 같다) 지 급비율을 제16 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 정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및 생산비용 등의 기준과 그 밖에 적정 가격 산정 등 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적정가격보장 제의 차액(적 정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비 율을 심의위원 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매 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 다.		④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최저가 격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시장가 격과 기준가 격, 생산비용 등을 농산물최 저가격보장심 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매 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 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지 역특화 농산물 에 대하여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 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실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 축산식품부장 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 정제도의 차액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 이를 말한다. 이 이하 같다) 지 급비율을 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 다.	
<신 설>			제16조의4(종합			

현 행	윤준병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주철현 의원안
			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 관은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 제 실시를 위 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 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 하고, 추진 실 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 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 행과 같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6조 의2에 따른 농 수산물 최저가 격보장제의 시 행 3. ~ 6. (현행 과 같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 행과 같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기금의 용도) ①~⑤ (현행과 같음)

현 행	윤준병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주철현 의원안
② 기금은 다 음 각 호의 사 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 2의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 의 시행 3. ~ 5. (현행 과 같음) ③ ~ ⑤ (현 행과 같음)		과 같음) ② ~ ⑤ (현 행과 같음)	②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16조 의2에 따른 농 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시행 3. ~ 5. (현행 과 같음) ③ ~ ⑤ (현 행과 같음)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생산량의 조절이 어려운 반면,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격 변동성이 높은 편임.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 수입비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과소생산 등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농수산물의 유입 또는 비축 농수산물의 방출로 인해 농어가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농수산물 과다생산 등의 이유로 가격이 폭락할 시에는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어가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므로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2022년 기준 88개의 지방자치단체(조례
內 가격안정제도 규정 지자체: 68개)¹¹⁾가 가격안정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중 19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최저가격 지원 실적¹²⁾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동 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품목·보장금액 등에 차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으로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어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직접적 가격지지 정책의 도입을 통해 국가 차원의 농어가 소득 안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어가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11) ① 가격안정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88개): 광역 7개(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 81개(경기 4, 강원 13, 충북 7, 충남 9, 전북 8, 전남 19, 경북 14, 경남 7)

② 조례 內 가격안정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68개): 광역 6개, 기초 62개

12) 최저가격 지원실적이 있는 지자체(2022 기준): 19개(광역 3, 기초 16) 615억원(누계)

[2020년: 48억원, 2021년: 73억원, 2022년: 116억원/ (광역/3) 충남·전북·제주, (기초/16) 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양구, 제천·충주·예산, 익산·임실, 함평·나주·순천, 안동·봉화

한편, 문금주의원안 및 주철현의원안은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점¹³⁾, 수산물은 일시에 다량으로 어획되고 쉽게 부패됨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높은 점,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따라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외에 수산물도 (가칭)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향후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대상 품목에 수산물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김승남의원안(의안번호 2100297), 신정훈 의원안(의안번호 2119331), 어기구의원안(의안번호 2123631), 이원택 의원안(의안번호 2123884), 주철현의원안(의안번호 2124286), 위성곤 의원안(의안번호 2124369), 윤재갑의원안(의안번호 2124385), 안호영 의원안(의안번호 2124433)에 대해서,

가격 보장 품목의 공급과잉으로 농수산물 수급불균형이 심화¹⁴⁾될 수 있으며,

13) <2021년 국내 1인당 식품 공급량> (식품수급표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물: 68.4kg, 쌀: 67kg, 육류: 66.2kg

14) 특정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은 '① 일부 품목 최저가격 보장 → ② 최저가격 품목으로의 생산 쏠림 → ③ 최저가격 품목 공급과잉 → ④ 가격하락 → ⑤ 정부보전 → ⑥ 공급과잉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임

현재 생산자 조직화¹⁵⁾ 및 채소가격안정제¹⁶⁾ 확대와 수산물 비축사업¹⁷⁾ 등을 통해 정부와 생산자가 협력하는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소득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 재정 소요 규모,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약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15) 의무자조금 조성 : (2021) 16개품목 → (2022) 18개 → (2027) 21개

- 인삼(2015) → 친환경(2016) → 백합·키위·배·파프리카·사과·감귤·콩나물·참외·절화·포도(2017~2019) → 양파·마늘(2020) → 뽕은감·복숭아(2021) → 차·자생란(2022)
- 농산 자조금법 제21조2에 따라 품목별 특성에 맞게 ① 경작·출하신고, ② 시장출하규격설정, ③ 단일유통조직 지정 등 품목별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 무임승차 배제를 위한 이행 수단 확충(예: 의무거출금 미납자, 경작출하신고 미이행자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16) 채소가격안정제 : 농업인과 농협 간 계약을 체결, 농업인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가격하락 시 손실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평년가격의 80%)

- 대상품목: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시범)
- 사업물량: 평년 생산량의 (2019) 12% → (2020) 15 → (2021) 16 → (2022) 17
- 예산(억원): (2016) 35 → (2017) 100 → (2018) 168 → (2019) 186 → (2020) 242 → (2021) 341 → (2022) 451 → (2023) 552

17) 수산물 주 생산시기에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명절 등 초과 수요 발생 시 방출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

라.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개정안은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관련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윤준병의원안·이원택의원안·문금주의원안·황명선의원안·어기구의원안·주철현의원안 제16조의3 신설 등)

현 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문금주의원안	황명선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신 설>	제16조의3(농산물 가격안정심의회)	제16조의3(농산물 가격안정심의회)	제16조의3(농수산물 가격안정심의회)	제16조의3(농산물 가격안정심의회)	제16조의3(농산물 가격안정심의회)	제16조의3(농수산물 가격안정심의회)
	물가안정심의회(이하 “물가안정심의회”)를 둔다.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1. 대상 품목의 선정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급비용 3. 차액의 지급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물가안정심의회(이하 “물가안정심의회”)를 둔다. 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대상 품목의 선정 2.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 3. 차액의 보전비용 4.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 “농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에 따른 농어업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품목을 농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물가안정심의회(이하 “물가안정심의회”)를 둔다.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대상 품목의 선정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급비용 3. 차액의 지급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물가안정심의회(이하 “물가안정심의회”)를 둔다.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1. 대상 품목의 선정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3. 차액의 지급 4. 농산물의 매입·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농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6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 2. 농수산물의 매입·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3.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현 행	윤준병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어기구 의원안	주철현 의원안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회를 둔다. 1. 대상 품목의 선정 2. 기준가격의 산정 3. 차액의 지급비율 4.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추계 5. 그 밖에 이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양식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4.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현 행	윤준병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주철현 의원안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차관이 되 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5명 이상이 어야 한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차관이 되 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5명 이상이 어야 한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 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차관 또는 해양수산부차 관이 되며,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차관이 되 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과반 이상 이어야 한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차관이 되 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5명 이상이 이어야 한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심의위원 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 부차관이 되 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과반 이상 이어야 한다.
	1. 농산물 가 격 및 수급 업 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 무원 2. 품목별 생 산자를 대표하 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 산물가격안정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	1. 농산물 가 격 및 수급 업 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 무원 2. 품목별 생 산자를 대표하 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 산물 적정가격 보장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	1. 농산물 가 격 및 수급 업 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 무원 2. 품목별 생 산자를 대표하 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 수산물 최저가 격보장제에 관 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	1. 농산물 가 격 및 수급 등 의 업무를 담 당하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 2. 품목별 생 산자를 대표하 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 산물가격최저 보장제도에 관 하여 전문지식 과 경험을 가 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	1. 농산물 가 격 및 수급 업 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 무원 2. 품목별 생 산자를 대표하 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 산물가격안정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	1.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 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품목별 생 산자를 대표하 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 수산물가격안 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을 가진 사 람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

현 행	윤준병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문금주 의원안	황명선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주철현 의원안
	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 는 사람	로 정하는 자 격기준에 맞는 사람	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자 격기준에 맞는 사람	부령으로 정하 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로 정하는 자 격기준에 맞는 사람	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 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다.	4. 그 밖에 심 의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 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여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예시가격 결정 및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음.

개정안은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차액의 지급비율 등과 농수산물의 매입·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적정 재배·양식면적, 생산량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칭)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비롯하여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제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김승남의원안(의안번호 2100297), 신정훈의원안(의안번호 2119331), 어기구의원안(의안번호 2123631), 이원택의원안(의안번호 2123884), 주철현의원안(의안번호 2124286), 위성곤의원안(의안번호 2124369), 윤재갑의원안(의안번호 2124385), 안호영의원안(의안번호 2124433)에 대해서,

기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신설하려는 심의위원회 간의 중복성 문제,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 기능 부여로 인한 정책의 적시성·탄력성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